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2013. 1. 23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2013. 7. 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중·소상인 등 유통업간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1) 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의 구성 관련 조항 규정(안 제8조)

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나) 협의회 10명 이내 → 9명 이내

다) 위원회 구성

(1) 구미지역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구미지역 전통시장, 슈퍼마켓,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구미시지역의 소비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구미시 지역의 유통산업분야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나 납품업체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람

(4) 구미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나.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절차 등 정비(안 제13조~제14조)

- 1)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 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3) 그 밖에 등록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다.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 등 상위법 개정조항 반영
(안 제14조의2)

- 1) 영업시간 제한 등 예외대상 조건 개정
농수산물 판매액 비중 51퍼센트 이상 → 55퍼센트 이상
- 2) 영업시간 제한범위 개정
오전 0시 ~ 오전 8시 이내 → 오전 0시 ~ 오전 10시 이내
- 3) 의무휴업일 지정범위 개정
매월 2일 이내 → 매월 공휴일 중 이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로 지정가능)

라.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용어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으로, “등록제한”을 “등록제한 및 영업시간의 제한”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제3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미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8조제2항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미시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제8조제3항제2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구미시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구미시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제8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구미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운영을 위하여”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둘 수 있으며”를 “두되,”로,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을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제9조제9호 중 “제8호까지”를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서”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을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를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를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로, “다음 각 호의”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

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부터 제5항(중전의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③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에 미치는 영향 및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제6항제1호 중 “제4항에 따라”를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대규모점포 등”을 “대규모점포등의”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규모점포 등”을 “대규모점포등”으로, “구미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로,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를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을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8시”를 “10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들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 ----- 등록제한 및 영업시간의 제한--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 7.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제2조제4호----- -----. 4.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 5. ~ 7. (현행과 같음)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미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미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 . -----
-----.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규모 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
9명 -----
-.

③ 협의회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미시지역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구미시지역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구미시의회 의원

4. 구미시지역의 소비자단체 대표

5. 구미시지역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③ -----
----- 각 호의 사람 -----
-----.

1. 구미시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 전통시장-----
-----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구미시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구미시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삭 제>

<삭 제>

6. 구미시지역의 소상공인지원 센터 관계자	<삭 제>
7. 구미시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삭 제>
8. 기타 구미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
9. 구미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	9. 구미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되, -----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⑤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제9조(협의회의 업무) ----- -----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신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13조제5항----- ----- 8의2.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9. -----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서 ----- ----- ----- ----- ----- -----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 ----- ----- 범위----- -----. 제4장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
--	---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
 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
 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
 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
 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
 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
 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
 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
 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
 서를 말한다)

<신 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
 11조-----준대규
 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
 ----- 「유
 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
 조제1항에 따른 -----
 -----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② 제1항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③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에 미치는 영향 및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생략)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구미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

-----.

1. 제5항에 따른 -----

2. (현행과 같음)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
----- 대규모점포
등의 -----

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미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대규모점포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
-----.

1. -----
----- 10시-----

2. 의무휴업일은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

② (생략) 제16조(시행규칙) 이 <u>조례 시행에</u>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u> <u>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u> <u>지정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 <u>조례의 시행</u> <u>에</u> ----- -----.
--	---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23]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

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제2항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본조신설 2013.7.22]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

13.7.22>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4.23]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4.23]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9.10.14, 2011.1.18, 2012.10.5, 2013.4.23, 2013.7.22>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m²)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라.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바.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사. 상권영향기술서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7.22>

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2>

1.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2.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3.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④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11.1.18, 2013.7.22>

1.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⑤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2013.7.22>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⑥ ~ ⑦ 생략

[제목개정 2011.1.18]